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1012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김지선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손광희

변론 종결2024. 3. 8.

판결 선고2024. 5. 24.

주 문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채권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7. 6.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E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작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투자 매매업 및 금융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D은 2019. 7. 29.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9.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3. 17.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2020. 6. 9.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9.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21. 8. 6.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자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관련 사건의 경과

1) D은 2021. 9. 28. ①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2019. 8. 9.부터 2020. 4. 3.까지 총 2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자금 합계 5,073,474,240원을 D이 지배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업무상 횡령을 하고, ② 원고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사이에 각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회사 자금 등을 송금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99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0호), D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노1864호) 위 ①, ②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어 D은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D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도2호)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아울러 위 1)의 ②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분할 신설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은 D, I, J, K에 대하여 각 허위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5808호), 위 제1심법원은 2022. 11. 24. 'D과 I은 각자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과 J는 각자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과 K는 각자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L의 관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I과 K가 항소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23나10137호), 위 항소심법원은 2023. 10. 5. 'I은 D과 공동하여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K는 D과 공동하여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L의 관리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D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양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 1) 한편 D은 2019. 6. 5. E과 사이에, D이 E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와 D은 2020. 2. 19. D이 가지고 있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3,0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3) 피고와 D은 2020. 7. 3. D이 가지고 있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3,000,000,000원 중 1,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채권투자(출자)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 4) D은 2020. 7. 6. 피고에게 위 1,5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2020. 8. 4.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E은 2020. 8. 5.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 5) 피고는 E에게 위 4)항 기재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0762호), 위 제1심법원은 2021. 10. 28. 'E은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E이 항소하여 2022. 7. 21. 'E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2022. 12. 31.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28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959,761,381원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109,692,740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D이 2019. 8. 9.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인 2020. 4. 3.까지 F, G, H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을 한 금액은 총 5,073,474,240원이고, 이중 F 및 G로 인출한 돈은 4,953,781,500원인데, 원고는 그중 미변제액이 959,761,385원이라고 주장(자인)하는바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9. 7. 31.부터 2020. 6. 30.까지 F와 G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뒤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2020. 10. 15. 기준으로 959,761,385원이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2020. 2. 19. 1,0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 959,761,385원과 전액 상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양도한 1,000,000,000원의 채권은 원고가 F, G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505,258,560원(= 210,258,560원 + 295,000,000원), 대전지방법원 2020하합1호 사건과 관련한 채권 250,000,000원 등 합계 755,258,560원과 상계된 것이지 위 959,761,385원과 상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F, G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D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959,761,385원에 포함되는 것이고, 대전지방법원 2020하합1호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F, G 관련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959,761,385원은 전액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한편, H에 대한 대여금 인출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119,692,740원(= 19,800,000원 + 99,892,740원)이고, I, J, K와의 허위 계약으로 업무상 횡령한 금액은 99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109,692,740원(= 119,692,740원 + 990,000,000원)에 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M은행, N은행, O은행, P은행, Q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고, 2020. 7. 31.을 기준으로 N은행에 예금 9원, O은행에 예금 총 15,048,462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D의 E에 대한 3,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한 1,500,000,000원을 제한 금액에서 2020. 2. 9. 원고에게 양도한 1,000,000,000원을 제하면 500,000,000원이 잔존하므로, 결국 D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515,048,471원(= 500,000,000원 + 15,048,462원 + 9원)이 된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에게 1,109,692,7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D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행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1) 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D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E에 대한 3,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2019. 7. 30.경 미리 공개한 점, 위 대여금 채권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은 점, D은 당시 부실기업이었던 원고에 대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투자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엇보이나, D이 피고에게 채권양도한 1,500,000,000원 상당이 다시 원고에게 투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D이 E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미리 공개하였다거나 3,000,000,000원의 채권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의 사해의사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피보전채권액(지연손해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채권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E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장동규

판사유지윤

별지

1)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2020. 2. 19.자 채권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청구원인으로 양수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9316호) 2023. 7. 13. 위 제1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2024. 2.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